

이혼(친권자 지정)신고서 ※ 신고서 작성 시 뒷면의 작성 방법을 참고하고,
(년 월 일) 선택항목에는 '영표(○)'로 표시하기 바랍니다.

④재판확정일자 ()	년 월 일	법원명	법원
----------------	-------	-----	----

⑤ 친 권 자 지 정	미성년인 자의 성명						
	주민등록번호			-			
	친권자	① 부 ② 모	효력발생일	년 월 일	① 부 ② 모	효력발생일	년 월 일
		③ 부모	원인	① 협의 ② 재판	③ 부모	원인	① 협의 ② 재판
	미성년인 자의 성명						
	주민등록번호			-			
친권자	① 부 ② 모	효력발생일	년 월 일	① 부 ② 모	효력발생일	년 월 일	
	③ 부모	원인	① 협의 ② 재판	③ 부모	원인	① 협의 ② 재판	

* 타인의 서명 또는 인장을 도용하여 허위의 신고서를 제출하거나, 허위신고를 하여 가족관계등록부에 실재와 다른 사실을 기록하게 하는 경우에는 **형법에 의하여 처벌**받을 수 있습니다. **노표(●)로 표시한 자료**는 국가통계작성을 위해 통계청에 서도 수집하고 있는 자료입니다.

※ 첨부서류 및 이혼당사자의 국적은 국가통계작성을 위해 통계청에서도 수집하고 있는 자료입니다.

가 실제 결혼 생활 시작일		년 월 일부터		㉔ 19세 미만 자녀 수		명		
나 실제 이혼 연월일		년 월 일부터						
㉔ 최종 졸업학교	남편 (부)	① 학력 없음	② 초등학교	③ 중학교	아내 (처)	① 학력 없음	② 초등학교	③ 중학교
		④ 고등학교	⑤ 대학(교)	⑥ 대학원 이상		④ 고등학교	⑤ 대학(교)	⑥ 대학원 이상
㉔ 직업	남편 (부)	① 관리직	② 전문직		아내 (처)	① 관리직	② 전문직	
		③ 사무직	④ 서비스직			③ 사무직	④ 서비스직	
		⑤ 판매직	⑥ 농림어업			⑤ 판매직	⑥ 농림어업	
		⑦ 기능직	⑧ 장치·기계 조작 및 조립			⑦ 기능직	⑧ 장치·기계 조작 및 조립	
		⑨ 단순노무직	⑩ 군인			⑨ 단순노무직	⑩ 군인	
		⑪ 학생·가사·무직				⑪ 학생·가사·무직		

※ 등록기준지: 각 편의 해당자가 외국인인 경우에는 그 국적을 기재합니다.

※ 주민등록번호: 각 편의 해당자가 외국인인 경우에는 외국인등록번호(국내거소신고번호 또는 출생연월일)를 기재합니다.

①란: 협의이혼신고의 경우 반드시 당사자 쌍방이 서명(또는 기명날인)하여야 하나, 재판상 이혼신고의 경우에는 일방이 서명(또는 기명날인)하여 신고할 수 있습니다.

②란: 이혼당사자의 부모가 주민등록번호가 없는 경우에는 등록기준지(본적)를 기재합니다. 이혼당사자가 양자인 경우 양부모의 인적사항을 기재하며, 이혼당사자의 부모가 외국인은 주민등록번호외에 외국인등록번호(또는 출생연월일) 및 국적을 기재합니다.

③란: 아래의 사항 및 가족관계등록부에 기록을 분명한지 하는 데 특히 필요한 사항을 기재합니다.

- 신고사건으로 인하여 신분의 변경이 있게 되는 사람이 있을 경우에 그 사람의 성명, 출생연월일, 등록기준지 및 신분변경의 사유

- 피성년후견인(2018. 6. 30.까지)에 기재한 자산자 포함)이 협의상 이혼을 하는 경우에는 동의자의 성명, 서명(또는 날인) 및 출생연월일

④란: 이혼판결(화해, 조정)의 경우에만 기재하고, 협의이혼의 경우에는 기재하지 않습니다.

⑤조성성립, 조정에 갈음하는 결정, 화해성립이나 화해권고결정에 따른 이혼신고의 경우에는 “재판확정일자”아래의 ()안에 “조정성립”, “조정에 갈음하는 결정확정” 또는 “화해성립”, “화해권고결정”이라고 기재하고, “연월일”란에 그 성립(확정)일을 기재합니다.

⑤란: 협의이혼의사확인 신청시에 기재하지 아니하며, 법원의 이혼의사확인 후에 정하여진 친권자를 기재합니다.

지정회택발생일은 협의이혼의 경우 이혼신고일, 재판상이혼의 경우에는 재판 확정일을 기재합니다.

원인은 당사자의 협의에 의해 지정한 때에는 “□협의”에, 직권 또는 신청에 의해 결정된 때에는 “□재판”에 “영표(○)로 표시하고, 그 내용을 증명하는 서면을 첨부하여야 합니다.

자녀가 5명 이상인 경우 별지 기재 후 간단하여 첨부합니다. 임신 중인 자의 경우에는 출생신고 시 친권자 지정 신고를 합니다.

⑥란: 출석한 신고인의 해당번호에 “영표(○)로 표시합니다.

⑦란: 제출인(신고인이 작성한 신고서를 신고인이 아닌 사람이 제출할 경우만 기재)의 성명 및 주민등록번호를 기재합니다. [접수담당공무원은 신분증과 대조]

㉠란, ㉡란: 가족관계등록부상 신고일이나 재판확정일과는 관계없이 실제로 결혼(동거)생활을 시작한 날과 사실상 이혼(별거)생활을 시작한 날을 기재합니다.

④란: 이혼할 당시의 주된 직업을 기준으로 기재합니다.

④ 서무종사자: 관리직, 전문직 일반종 종사자를 보충하여 업무 추진(행정, 경영, 보험, 강사, 상담·안내·복합 등)
 ⑤ 서무종사자: 공공안전, 민원보조, 돌봄, 의료보조, 미술, 훈련 및 강습, 운송, 어류, 조리와 관련된 업무
 ⑥ 판매종사자: 영업활동을 통해 상품이나 서비스 판매(단기 및, 상품, 공공장소 등), 상품의 광고·홍보, 계산·청산 등
 ⑦ 기능어업 숙련 종사자: 작물의 재배·수확, 동물의 번식·사육, 산림의 경작·개발, 수생 동물의 번식 및 양식 등
 ⑧ 농림어업 관련 기능 종사자: 광업, 제조업, 건설업에서 손과 수공구를 사용하여 기계 설치 및 정비, 제품 가공
 ⑨ 장치·기계 조립 및 조립 종사자: 기계를 조작하여 제품 생산·조립, 산업용 기계·장비 조작, 운송장비의 운전 등
 ⑩ 단조·조물 종사자: 주로 간단한 수공구의 사용과 단순하고 일상적이며 육체적이며 육체적 노력이 요구되는 업무
 ⑪ 군인·의무부무를 포함하여, 현재 군인신분을 유지하고 있는 경우(국방분야에 고용된 민간인과 예비군 제외)
 ⑫ 학생: 고·중·초·고에 재학 중인 전일제나 단일제나, 전일제(국립대학), 학칙한 학업이 없는 경우

1. 협의이혼: 협의이혼의사확인서 등본 1부
2. 재판이혼: 판결등본 및 확정증명서 각 1부 (조정·화해 성립의 경우는 조서등본 및 송달증명서).
3. 외국법원의 이혼판결에 의한 재판상 이혼
 - 이혼판결의 정본 또는 등본과 판결확정증명서 각 1부.
 - 패소한 피고가 유나리나 국민인 경우에 그 피고가 공시송달에 의하지 아니하고 소송의 개시에 필요한 소환 또는 명령의 송달을 받았거나 또는 이를 받지 아니하고도 응소한 사실을 증명하는 서면 1부 (판결에 의하여 이점이 없는 배척지 아니한 경우에 한한다).
 - 위 각 서면의 사본을 1부.

4. 이혼 당사자 각각의 가족관계등록부의 가족관계증명서, 혼인관계증명서 각 1통.

5. 사건본인이 외국인인 경우

- 한국 방식에 의한 이혼: 사건본인 쌍방이 외국인인 경우에는 국적을 증명하는 서면(여권 또는 외국인등록증)사본 첨부

- 외국 방식에 의한 이혼: 이혼증서 등본 및 국적을 증명하는 서면(여권 또는 외국인등록증) 사본 각 1부

6. 친권자지정과 관련한 소명자료

- 협의에 의한 경우 친권자지정 협의서등본 1부.

- 법원이 결정한 경우 심판서 정본 및 확정 증명서 1부.

7. 신분확인[가족관계등록예규 제443호에 의함]

① 재판상 이혼신고(증서등본에 의한 이혼신고 포함)

- 신고인이 출석한 경우 : 신분증명서

- 제출인이 출석한 경우 : 제출인의 신분증명서

- 우편제출의 경우 : 신고인의 신분증명서 사본

※ 신고인이 성년후견인이 경우에는 7항의 ① 서류 외에 성년후견인의 자격을 증명하는 서면도 함께 첨부해야 합니다.

② 혐의이후신고

- 시고인이 출석한 경우 : 시고인 임박의 시부증명서

- 시고이 불출선 제출이 출선의 경우 : 제출이의 시분증면서 및 시고이 일반의 시분증면서 또는 서명공증 또는 이가

증명서(시고이의 시부증명서 없이 시고서에 시고인이 서명한 경우 서명공증 시고서에 이각 난이한 경우 이각증명)

○ 음폐계출이 격음 : 시고의 이바의 서명공중 또는 이가중면서(시고서에 서명하 격음 서명공중 이가음 난이하 격음

구원제도의 경우 : 근로한 월령의 제○○○ 또는 연금○○○지(근로자에 제○○○한 경우 제○○○○, 연금을 불납한 경우
는 이가증면서)